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6. 10 선고 2020나111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9가합5078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82,760,8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2017. 12. 20.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인정근거]에 “갑 15, 1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쪽 15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추심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 9쪽 8행의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 C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9쪽 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여 주면 이를 추심하여 원고의 S에 대한 채무 1억 5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4, 5조의 기재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C, S, E, L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 내지 정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C이 채무자인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 또는 약정 위반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 C이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 C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에서 원고의 S, 피고 C, E, L에 대한 채무액을 모두 공제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 C이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에서 원고의 S, 피고 C, E, L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4. 마쳐졌고, 대한민국(북전주세무서)은 2015. 9. 2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14번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김제시가 1순위로 1,287,790원(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14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부분)과 46,640원(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14번 부동산 부분)을, 유한회사 O1) 이 2순위로 1,660,196,304원을, 3순위로 대한민국(북전주세무서)에 59,721,650원(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14번 부동산 부분), 피고 C에게 223,039,177원(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14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부분)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C은 이 사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였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배당표에 따라 피고 C에게 배당되었던 223,039,177원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14번 부동산에 관하여 3순위로 대한민국(북전주세무서)에 배당된 59,721,650원 합계 282,760,827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② 원고의 S에 대한 차용금채무액은 2억 원(원고는 S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잔액이 1억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하여 차용금채무액은 1억 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원고의 채무액은 위 282,760,827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경미, 판사 홍승모, 판사 정순열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김제시 G 답 671㎡
2. 전라북도 김제시 H 전 2,010㎡²⁾
3. 전라북도 김제시 I 전 1,385㎡³⁾
4. 전라북도 김제시 U 답 4,936㎡
5. 전라북도 김제시 V 전 10,639㎡
6. 전라북도 김제시 W 전 2,735㎡⁴⁾
7. 전라북도 김제시 X 전 86㎡
8. 전라북도 김제시 Y 전 1,136㎡
9. 전라북도 김제시 Z 전 168㎡
10. 전라북도 김제시 AA 전 2,868㎡
11. 전라북도 김제시 J 전 2,406㎡⁵⁾
12. 전라북도 김제시 K 답 922㎡
13. 전라북도 김제시 AB 답 1,088㎡⁶⁾
14. 전라북도 김제시 AC 답 1,395㎡
15. 전라북도 김제시 AD 답 1,603㎡⁷⁾
16. 전라북도 김제시 AE 답 2,119㎡⁸⁾, 끝.

2) 전 462㎡가 2018. 9. 18. AF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동산

3) 전 485㎡가 2018. 9. 18. AG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동산

4) 전 1,112㎡가 2018. 9. 18. AH으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동산

5) 전 193㎡가 2018. 9. 18. AI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동산

6) 답 867㎡가 2018. 9. 18. AJ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동산

7) 답 294㎡가 2018. 9. 18. AK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동산

8) 답 1,847㎡가 2018. 9. 18. AL으로 분할되기 이전의 부동산

[별지2]

채권의 표시

채권자 C과 채무자 ㈜Q 대표이사 AM, 연대보증인 A 간의 공증인가 R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953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상의 채권 전액. 끝.

- 1) 유한회사 O은 신청채권자 M조합(2014. 3. 31.자 근저당권자)의 승계인의 지위로 배당받았다(갑 2, 3호증)